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예) 6.30에 일반직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3)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됨

(4)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가)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나) 누계시간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div8시간= 3일 5시간$

(5) (1)~(4)의 절차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일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 (1)~(4)의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차감

마) 연가보상비 및 연가저축 관련

(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연가저축, 연가보상비 적용에서 제외됨